

# 우리 가족의 행복한 선택!



여 성 부

### 1. 호주제의 실상과 문제점

호주제의 실상  
사회적 피해  
우리의 전통인가?  
위헌성 논란  
국제사회의 우려

### 2. 민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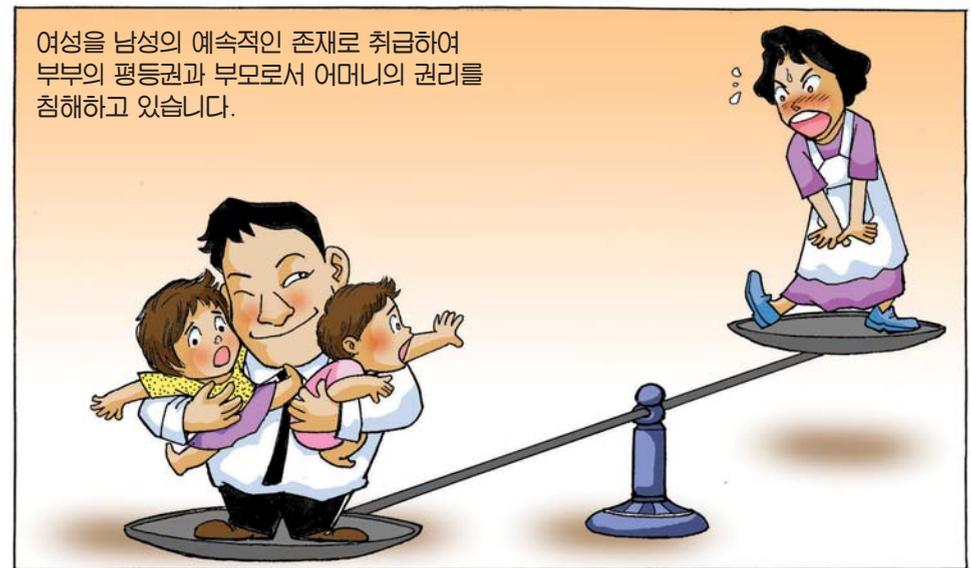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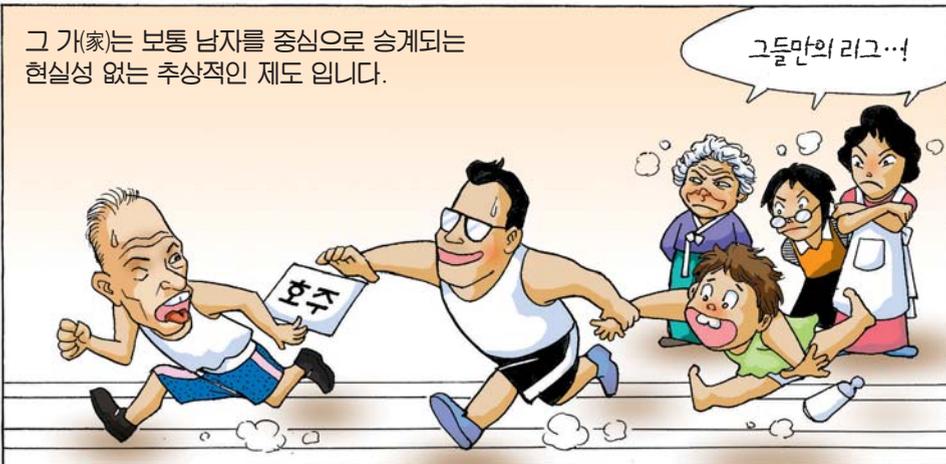
호주 관련조항 삭제  
가족범위 재규정  
부성원칙으로 완화  
기대효과

### 3. 주요질의 사항



# 1. 호주제의 실상과 문제점

## | 호주제의 실상 |





사회적 폐해



| 우리의 전통인가? |



| 위헌성 논란 |



| 국제사회의 우려 |



## 2. 민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 | 호주 관련조항 삭제 |

호주제 관련조항이 삭제됩니다

**호주의 정의** <민법 제778조>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자,  
 기한 자, 일가 창립 및 부흥한다 등

### | 가족범위 재규정 |

<가족의 범위>도 재규정 됩니다.

**가족의 범위** <현행>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에 의해 그 가(家)에 입적한 자.

호주에 종속된 가족 대신 새로운 가족관계의 미풍양속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개정안>**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 부성원칙으로 완화 |

지금은 이렇지만

**<부성강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가(家)에 입적

이제와 같이 개정됩니다

**<부성원칙>**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너는 이 다음에 네 아이들을 누구 성 따르게 할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름

저는 가(家)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 성 선택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부모를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외에는 성과 본을 변경하지 못하나

**<개정안>**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 변경 가능

| 기대효과 |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호주제 폐지로  
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한 혼인과 가족생활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춰 재혼 및 이혼 가정의 고통을 완화 할 뿐 아니라,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 출생 성비 불균형 등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UN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로부터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오던 호주제가 폐지되면  
우리나라는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이 강화 될 것입니다.

3. 주요질의 사항

| 가족 해체가 심화 되지 않나요? |

한 마디로 기우입니다.  
그것도 밝은 태양아래...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호주제가 존재하지 않으나  
가족과 가족제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호주제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에서 2위라는 사실은 오히려 아이러니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평등한 부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근친혼 우려는 없나요? |**



**| 상속이나 연금수혜는 어떻게 되나요? |**



| 호적과 족보는 어떻게 되나요? |



| 향후 호적제도 개편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나요? |



부록

민법개정안 비교표  
외국의 성씨제도  
관련기사

# 민법개정안 비교표

| 조항                                   | 현행                                                                                  | 개정안                                                                                                                                                                                                                                                                                    |
|--------------------------------------|-------------------------------------------------------------------------------------|----------------------------------------------------------------------------------------------------------------------------------------------------------------------------------------------------------------------------------------------------------------------------------------|
| 호주의 정의 (제778조)                       |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자, 분가한 자, 일가창립 및 부흥한 자등                                              | 삭제                                                                                                                                                                                                                                                                                     |
| 가족의 범위 (제779조)                       |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br>기타 민법에 의해 그 가(家)에 입적한 자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br>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자(子)의 입적 및 성과 본 (제781조)              |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가(家)에 입적, 아버지가 외국인인 때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가(家)에 입적(부성 강제) |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름(부성 원칙)<br><br>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 변경 가능<br><br>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합의에 의해 중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전의 성과 본 사용 가능 |
|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 등 (제780, 782~796조) |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                                                 | 삭제                                                                                                                                                                                                                                                                                     |
| 아내의 입적 (제826조 제3항, 제4항)              | 아내는 남편의 가(家)에 입적                                                                    | 삭제                                                                                                                                                                                                                                                                                     |
| 호주승계 (제4편 제8장)                       |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을 때 호주가 승계되며 그 순서는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와 직계비속 여자, 아내의 순                    | 삭제                                                                                                                                                                                                                                                                                     |

# 외국의 성씨제도

| 구분                  | 성씨제도                                                                        | 자녀의 성 결정 및 변경                                                                               |
|---------------------|-----------------------------------------------------------------------------|---------------------------------------------------------------------------------------------|
| 우리나라                | 부부 각자의 성 유지                                                                 | 父姓 강제<br>*민법개정안: 父姓 원칙이되, 협의에 의해 母姓 가능(자녀의 복리를 위해 서 변경 가능)                                  |
| 미국, 영국              | 자유로이 결정 (처가 원하는 경우 남편의 성을 따름)                                               | 협의하여 父姓 또는 母姓 또는 결합성 중 선택<br>*협의 불가시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따라 결정 하며, 자녀의 복리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의해 성 변경가능(미국) |
| 중국                  | 부부 각자의 성 유지                                                                 | 협의하여 父姓 또는 母姓 중 선택                                                                          |
| 프랑스, 그리스            | 부부 각자의 성 유지                                                                 | 협의하여 父姓 또는 母姓 중 선택<br>*협의 불가시 父姓 원칙                                                         |
| 독일                  | 협의하여 부부 성 중 한 성을 공동성으로 선택 (가족동성)<br>*협의 불가시 각자 성 유지                         | 父姓 또는 母姓 중 가족공동성<br>부부 각자의 성 유지시 협의하여 父姓 또는 母姓 중 선택<br>*부의 동의하에 변경 가능, 5세이상인 경우 자녀의 동의 필요   |
| 일본                  | 혼인시 부부성 중 한 성을 공동성으로 선택(가족동성)<br>* 1948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 폐지                     | 父姓 또는 母姓 중 가족공동성                                                                            |
| 오스트리아               | 협의하여 부부 성 중 한 성을 공동성으로 선택(가족동성)<br>*협의 불가시 남편의 성이 가족공동성으로 되나 처의 혼인전 성 사용 가능 | 父姓 또는 母姓 중 가족공동성<br>부부 각자의 성 유지시 협의하여 父姓 또는 母姓 중 선택<br>*협의 불가시 父姓 원칙                        |
|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 협의하여 부부가 같은 성을 사용(혼인성) 또는 각자의 성 사용                                          | 혼인성 사용시 혼인성<br>부부 각자의 성 유지시 협의하여 父姓 또는 母姓 중 선택<br>*협의 불가시 母姓 원칙                             |
| 스위스                 |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br>*협의시 아내의 성을 따르는 것 가능                                    | 父姓 원칙<br>*협의하여 母姓 사용 가능<br>*자녀 복리를 위해 성 변경 가능                                               |
| 스페인, 포르투갈, 라틴 아메리카  | 부부의 성 조합(결합성)                                                               | 결합성                                                                                         |

## 동 | 아 | 일 | 보

2003.10.30

### 호주제 이제 정리되어야 한다

호주제 폐지 법안이 논란 끝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이혼이 급증하면서 호주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과 고통을 안겨 줬다는 점에서 오히려 때늦은 느낌마저 없지 않다. 전통적인 가족형태에 익숙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호주제 폐지는 당혹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호주제는 사회 변화를 반영해야 할 법과 제도로써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다.

재혼가정 편부모가정 등 새로운 가족형태는 이제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혼율을 강제로 낮출 수 없듯이 이런 가족들이 늘어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가족 형태의 변화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그에 맞춰 제도가 달라지는 수밖에 없다. 재혼가정 아이들이 새 아버지와 성(姓)이 달라 사회생활에서 고통을 겪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더구나 호주제가 여성차별적인 조항으로 일부에서 위헌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새로운 가족제도를 마련하는 게 순리

다. 현행 호주제에 문제가 많다는 점은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들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호주제가 사라지면 당장 가족질서가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사회적 관습의 힘이 법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지금처럼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반대로 호주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가족 해체가 막아지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정서에서 다소 꺼려지는 것은 '아버지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는 것이다. 새 법안이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을 바꿀 수 있게 한 것은 이 같은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호주제 논란은 이제 정리되어야 한다. 호주제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앞으로 논쟁의 초점은 호주제를 대체할 합리적인 가족제도를 모색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 중 | 앙 | 일 | 보

2003.10.31

### 국회, 호주제 폐지 적극 임해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국회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5월 7개 부처와 11개 시민단체 등으로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을 발족한 이래 반년 만에 일궈낸 성과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공약의 단골 메뉴였으나 막상 총선 때는 득표를 저울질하다가 슬며시 자취를 감추곤 했던 것이 호주제 폐지의 지난 역사였다. 이제 국회도 달라져야 한다. 사회 변화에 걸맞은 입법을 함으로써 법과 관습의 괴리를 막는 것이 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호주제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과거지향의 유산으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40년간 호주제 폐지운동을 펼쳐온 여성계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도 호주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1999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지적을 필두로 국제사회에서도 호주제가 가부장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거듭 표시해 왔다.

그러나 가(家)를 중시하는 전통문화의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2001년 이후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 심판 제청건만도 9건이나 쌓일 정도로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이들은 늘고있다. 출산율 1.17 이혼율 세계2위인 한국 사회에서 할머니가 어린 손자의 보호 아래 놓여 가족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딸만 있어 폐가를 감수해야 하며,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성이 달라 사회적 냉대를 받는 것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개정안이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가족 범위를 새롭게 규정한 것은 호주제 폐지가 가족의 해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보완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법안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폐지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을 거쳐 빨리 처리하는 것이 옳다.

# 한 | 겨 | 레

2003.11.8

# 동 | 아 | 일 | 보

2004.2.23

## 근대호적제는 일제의 통치수단으로 도입

### 메이지유신서 나온 국민 편성·통합 장치

식민강점기 일제가 조선에 들여온 호적제도와 창씨개명 강요는 근대 국민국가가 전제적 통치구조를 확립하고 조선인 징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임경택 전북대 교수는 7일 ‘일제의 ‘국민’ 만들기 : 민적법에서 창씨개명까지’란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양대 정치적 도구인 천황제와 율령제이며, 호적제도는 율령제에 따라 ‘국민’의 법적 편성과 통치기구 정비를 통해 국민 통합의 이념과 실체를 창출해냈다.

호적 편성은 ‘주거지의 호(戶)’를 단위로 하는 구미 제국의 신분증서 제도와 구별됐다. 호주에

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우고 사회정책적 기능의 일부를 떠맡김으로써 천황에서부터 가족까지 수직적 위계질서로 짜인 가부장적 국가주의의 면모를 갖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 교수는 일본 천황 집안에는 지금도 호적이 없다고 소개했다.

호적제도는 식민지로도 이식됐다. 1923년 조선호적령이 시행되면서 모든 조선인도 호적등록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 육군성이 관할한 호적 정비는 징병 적령자의 현황과 소재를 파악하는 중요 수단이 됐다.

## 유전학적 호주는 여자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최재천(崔在天·50)교수는 ‘호주제 존폐’에 관한 헌법재판소 자문에 응해 ‘유전적으로나 진화적 측면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기여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혈통을 기록하는 현재의 호주제는 비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수컷의 유전자는 다음 세대의 세포중 세포핵 절반에만 전달됩니다. 핵의 나머지 절반은 물론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한 세포질 내의 다른 물질들은 모두 암컷으로부터 온 것이죠. 이런 이유로 생물학자가 동물의 혈통을 밝힐 때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핵의 DNA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추적해 어느 암컷의 자손인가를 밝힙니다.

…… “호주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제 주장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위해서입니다. 수컷의 사망률은 청년기에는 암컷에 비해 3배가량 높다가 장년기에 접어들면 같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유일한 예외가 한국남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통계에서 40대, 50대 남자 사망률이 여성의 3배까지 치솟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여성의 시대’를 받아들임으로써 궁극적 평안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수레바퀴에 깔리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 문 | 화 | 일 | 보

2004.4.29

MBC

2004.4.12.23:00방영

## 양반집 딸들도 제사 모셨다

조선시대 양반가문에서 적장자(嫡長子·정실 부인 소생 중 장남인 자)중심의 종법제(宗法制)가 17세기 중반에 확립되고 보편화됐다는 일반적 가정과는 달리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딸에 대한 재산분급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적어도 분재기(分財記)상에는 봉사조(奉祀條·제사를 받드는데 쓰기 위해 별도로 떼어둔 재산 항목)외에 장차남이나 아들과 딸의 구분을 두지 않는 평균분집(平均分執)이 명시돼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외손이 제사를 받드는 사례도 계속해서 나타나며 18세기초의 분재문서에도 이를 위한 재산분급을 보여주는 외조 제위(祭位) 및 외증조 제위가 염연히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경북 안동 일대에서 대대로 거주해온 의성 김씨 청계파(靑溪派)의 집안에서 보존돼 내려온 27점의 분재기 분석을 통해 16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250여년간 재산상속

에서 달라진 여성의 위치를 살펴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하 정문연) 문옥표(인류학)교수의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다.

…… 특히 의성 김씨 청계파의 분재기를 통해 의성 김씨 뿐만 아니라 동래 정씨, 전의 이씨, 수안 이씨, 진성 이씨 등 의성 김씨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집안들에서도 거의 대부분 18세기 초까지 외손을 포함해 아들, 딸 구별없이 돌아가며 제사를 모시는 윤회(輪回)와 3~4대에 이르는 외손봉사, 딸에 대한 분재가 행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제사 및 재산의 상속을 적장자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 종법제가 이념적 교화의 수준에서는 조선초기부터 널리 강조되고 16세기 말경부터 당시 학자들에 의한 가례 규범서에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 수준에서는 양반가문에서도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문교수는 설명했다.

## 「도올 특강 - 우리는 누구인가」중에서

호주라는 용어는 일제시대에 생긴 것으로 호주라는 말 자체가 남성중심적이며 우리나라에는 주호(국역을 담당할 그 집의 대표)가 있었다.

주호가 호적단자를 직접 써서 향청이나 한성부(서울 시청)에 제출하면 한성부에서 준호구를 작성·발행하는 등 전국의 호적을 관리하였다.

1852년 한성부에서 발행한 조선말 실학자 최한기의 준호구를 보면 주호의 4조(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부인, 부인의 4조, 아들, 아들의 부인, 노비가 기입되어 있으며, 주호가 사망하면 아내가 승계를 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양성평등적이었다.

# 국 | 민 | 일 | 보

2004.5.27

## 새 남편 姓 따르게 하려고... 멀쩡한 딸 허위 미아신고

딸을 재혼한 남편의 성(姓)으로 호적에 올리기 위해 허위로 미아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이 재혼할 경우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전 남편의 성씨를 따르도록 돼 있는 현행 호주제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 경찰에 따르면 어머니 전씨는 지난 94년 동거남인 황모씨 사이에서 황양을 낳았지만 돌잔치를 앞두고 동거남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러던 중 전씨는 98년 현재의 남편 서모씨와 재혼했고, 이때 딸을 새 남편 호적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전씨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호주제 때문에 딸이 새 아버지 성을 받지 못해 학교에서 놀림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허위신고했다”고 울먹였다.

.....전씨는 “우리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해 저같이 고민하는 엄마가 얼마나 많겠느냐”며 용서를 청했다.



· 발행일 | 2004년 6월

· 발행인 | 여성부 장관

· 발행처 | 여성부

· 삽 화 | 김형배

· 디자인 | 좋은 씨앗 (02-2266-5548)